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10. 15.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97호
----------	------

제출연월일 : 2018. 10.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논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금액(안 제3조~제5조)
- 다. 지원절차(안 제6조)
- 라. 교복구입비 환수(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8. 9. 20. ~ 10. 1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1)

□ 조례안

논산시조례 제 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고등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평 생 교 육 과 장	조 영 경
	교 육 지 원 팀 장	한 창 건
	담 당 자	김 성 수 (746-5762)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322,200,000원

◎ 2019년 교복 기준

- 300,000원 × 1,074명 = 322,200,000원

3. 작성자

평생교육과장 조영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22,200	348,000	320,700	322,800	321,600	1,635,300	
국 비						0	
기 금						0	
도 비						0	
시 비	322,200	348,000	320,700	322,800	321,600	1,635,300	
세 출	322,200	348,000	320,700	322,800	321,600	1,635,300	
308 자치단체등이전 08교육기관에대한보조	322,200	348,000	320,700	322,800	321,600	1,635,608	
재원 조달	322,200	348,000	320,700	322,800	321,600	1,635,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2,200	348,000	320,700	322,800	321,600	1,635,300
	지방세	322,200	348,000	320,700	322,800	321,600	1,635,30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참고 2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 조례제정 : 37개 (완료 23개, 입법예고 14개)

(2018. 9. 18.현재)

지자체	구분	지자체	비고
합계		37개 기관	
서울(1)	입법예고(1)	강동구	
인천(1)	조례제정(1)	강화	
부산(3)	입법예고(3)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경기(17)	조례제정(15)	성남, 용인, 안양, 과천, 안성, 광명, 수원, 오산, 가평, 동두천, 의정부, 평택, 고양, 남양주, 포천	
	입법예고(2)	양주, 파주	
강원(5)	조례제정(2)	철원, 정선	
	입법예고(3)	홍천, 삼척, 고성	
전북(1)	조례제정(1)	군산	
전남(6)	조례제정(3)	영광, 화순, 영암	
	입법예고(3)	고흥, 나주, 장성	
경북(1)	조례제정(1)	울진	
경남(1)	입법예고(1)	남해	
충북(1)	입법예고(1)	진천	